2021년 12월 10일 금요일



※ 조합한 자격기준: 서울 경기·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, 무주비자 또는 전용면적 85m(이하 1채 소유자,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(투기과일자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) 또한, 다른 또는 같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. ■ 조합형 분담금은 조합원의 압주예정 대상 명합병 세대수의 평균신출로 책정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습인 후 공개추점 방식으로 결정된 동·호수를 조합총회를 통해 돈·호·총·합별 기타 세대 거치를 고라한 차등적용 공급금액으로 조합된 개별 분담금이 확정,결정 됩니다. ■ 건설예정세대, 동, 호, 타입 등 건축개요, 조합원 남부분담금 총액 및 암정, 시공예정사, 최임동호수 등은 안하기 및 시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 시·총회의 의결로 확정합니다. ※ 상기 이미지는 각종 개발 계획(지구단위계획수람 등)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조합원분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, 사업 인하기, 실계변경, 시공사 변경 또는 찬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빨생될 수 있습니다. ※